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2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 : 엄태영 • 유용원 • 김상훈

박충권 • 박덕흠 • 조지연

서천호 · 강명구 · 이종배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9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			
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한 과세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				
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				
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				
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				
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				
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				
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	<u>20</u>			
<u>24년 12월 31일</u> 까지 주택 건설	<u>26년 12월 31일</u>			
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